



제422회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유사한
상품·용역을 판매하는 점포 설치 금지〉

■ 이학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847호)

2025. 2.

정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황승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이학영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4. 12. 23.
- (3) 회 부 일 : 2024. 12.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은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본부가 가맹계약기간 중 해당 영업지역에 직영점이나 다른 가맹점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제12조의4제3항).

그러나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대리점 등의 점포를 설치하는 경우 사실상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침해하는 결과가 됨에도 이를 영업지역 침해행위로 규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가맹점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과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점포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권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4제3항).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가맹점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과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점포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4제3항).

현행	개정안
제12조의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 ①·② (생략) ③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수요층의 지역적·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동일하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을 말한다)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의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수요층의 지역적·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동일하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을 말한다)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의 직영점이나 가맹점 2. 제1호 외의 점포로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경쟁관계에 있는

현행	개정안
	<u>상품이나 용역을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아 판매하는 점포</u>

□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조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¹⁾.

○ 또한,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중 하나로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안에서 직영점을 설치하거나 가맹점사업자와 유사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²⁾.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하여야 한다.

③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수요층의 지역적·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동일하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을 말한다)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의5제1항·제4항,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제2항, 제12조의3제1항·제2항, 제12조의4, 제12조의5, 제12조의6제1항, 제14조의2제5항, 제15조의2제3항·제6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금의 예치, 정보공개서등의 제공, 점포환경개선 비용의 지급, 가맹금 반환,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내용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5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의5제1항·제4항,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제2항, 제12조의3제1항·제2항, 제12조의4, 제12조의5, 제12조의6제1항, 제14조의2제5항, 제15조의2제3항·제6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가맹본부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가맹본부의 준수사항) 가맹본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6. 가맹계약기간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안에서 자기의 직영점을 설치하거나 가맹점사업자와 유사한

- 그러나 일부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지만 취급품목, 수요층, 영업 시간 등의 차이로 별개의 업종으로 분류된 다른 점포가 근접 출점함에 따라 기존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³⁾⁴⁾.
- 이에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용역을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아 판매하는 점포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임.
- 가맹본부의 중복 출점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법에서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개정안과 같이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상품·용역과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용역을 판매하는 점포의 설치를 금지하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권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개정안은 기존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용역을 판매하는 점포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①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쟁관계’ 등 설치가 금지되는 점포를 판단할 기준이 불명확하여 법 적용 여부에 대한 예측이 어렵고, 법 적용 대상이 과도하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② 위반 시 제재수단으로 시정조치,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의 금지

3) 'GS25 옆 GS더프레시' GS리테일 무차별 근접 출점에 편의점주 반발(비즈니스한국, 2024. 2. 22.)

4) 편의점과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사례를 보면, 편의점은 주력 취급품목이 담배, 음료, 즉석식품이고 영업시간 제한이나 휴업 의무가 없는 반면, SSM은 농·축·수산물, 신선식품을 주력 취급품목하고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매월 2회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있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판단 기준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현행법령⁵⁾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거래하는 상품·용역과 동일·유사한 상품·용역에 관한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고 있음.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중 영업지역 관련 내용>

6.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마.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 1) 법 제12조의4에 따라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적는다는 사실과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서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가맹본부 또는 그 계열회사가 운영하는 직영점·가맹점으로 한정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한다는 사실(가맹본부 또는 그 계열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영업표지 중 해당 가맹사업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표지가 존재하는 경우 그 영업표지도 함께 적는다)
-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0. “정보공개서”란 다음 각 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한다.

가.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나.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가맹점사업자의 매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다. 가맹본부와 그 임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

- 1) 이 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 2)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하거나 편취하는 죄에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 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경우
- 3)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하거나 편취하는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라.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마.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바.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사.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과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아. 가맹본부의 직영점(가맹본부의 책임과 계산 하에 직접 운영하는 점포를 말한다. 이하 같다) 현황(직영점의 운영기간 및 매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 의무 등) ①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①법 제2조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의 기재사항(이하 “정보공개사항”이라 한다)을 말한다.

-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영업지역을 재조정하는 경우에 가맹점사업자에게 미리 알리는 절차와 동의를 받는 방법
-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보장받는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 및 용역을 판매하는 데 따르는 제한
- 5)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거래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상품이나 용역을 거래하고 있는 경우 이에 관한 내용
- 6) 가맹본부가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거래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상품이나 용역을 거래하고 있는 경우 이에 관한 내용
-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현행법에서 이미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어 법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고, 가맹점과 다른 형태의 판매조직 개설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영업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 우려가 있으며, 그 개설이 가맹점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14